

올바른 훈련문화 조성을 위한 부정훈련예방교육

부정훈련관리센터



CONTENTS

- 01 지도감독 관련 법령
- 02 행정처분 관련 통계
- 03 주요 부정훈련 사례
- 04 훈련운영 참고자료



1. 지도감독 관련 법령



1. 일학습병행과정 시정명령, 인정의 취소, 운영의 정지

제15조(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이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정의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④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의 신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일학습병행 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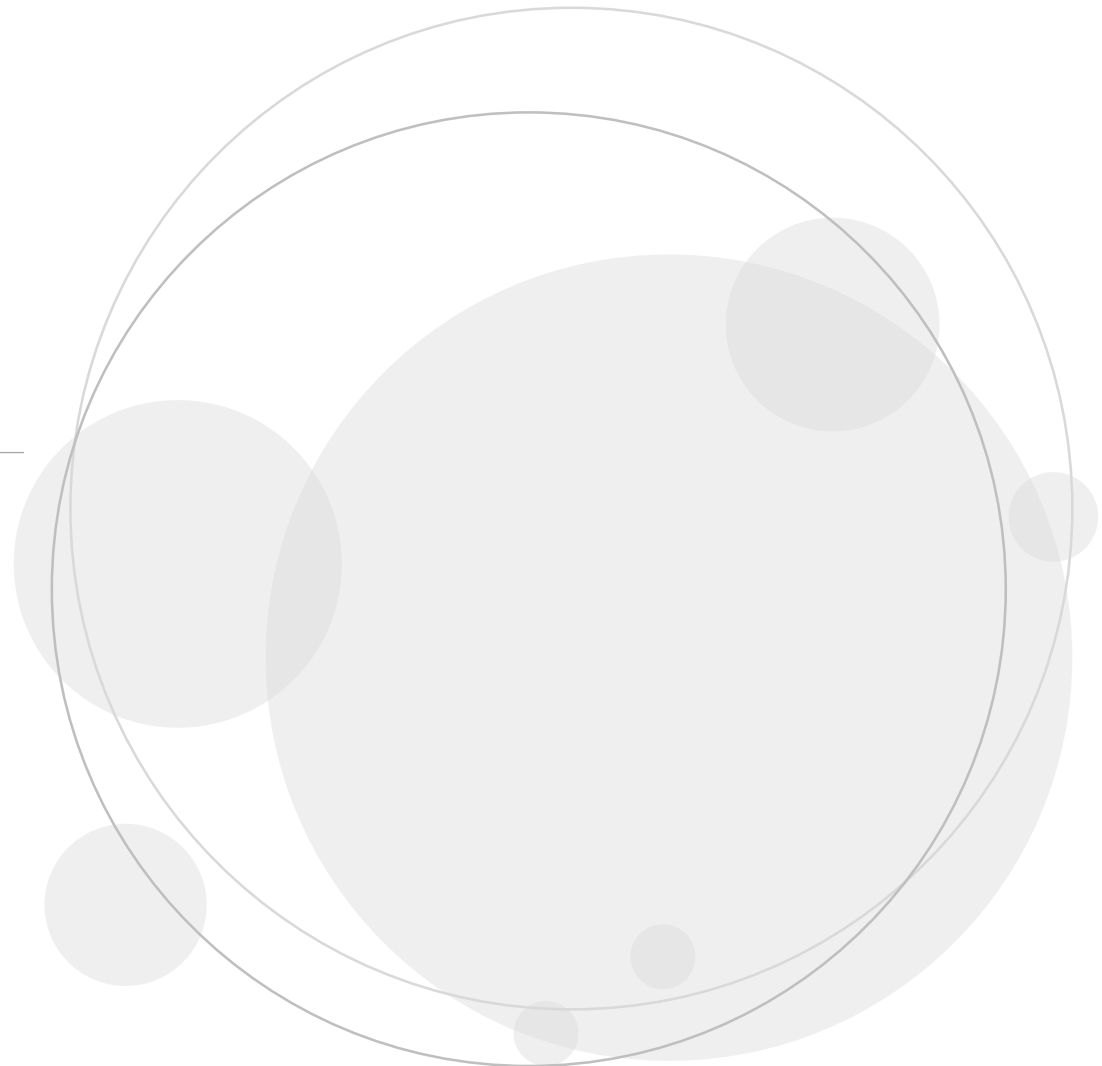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부 조치 기준(별표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1호	인정 취소			
나.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2호	인정 취소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3호				
1)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장소 및 시설·장비,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상황 등 학습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 취소			
3) 그 밖에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인정 취소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4호				
1)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3개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인정 취소
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5호	인정 취소			



2. 행정처분 관련 통계

1. 언론보도
 2. 위반행위 유형
- 

1. 언론보도

(출석부-허위 작성)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적발된 해당 업체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날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9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부정수급

등록 2018-04-02 14:3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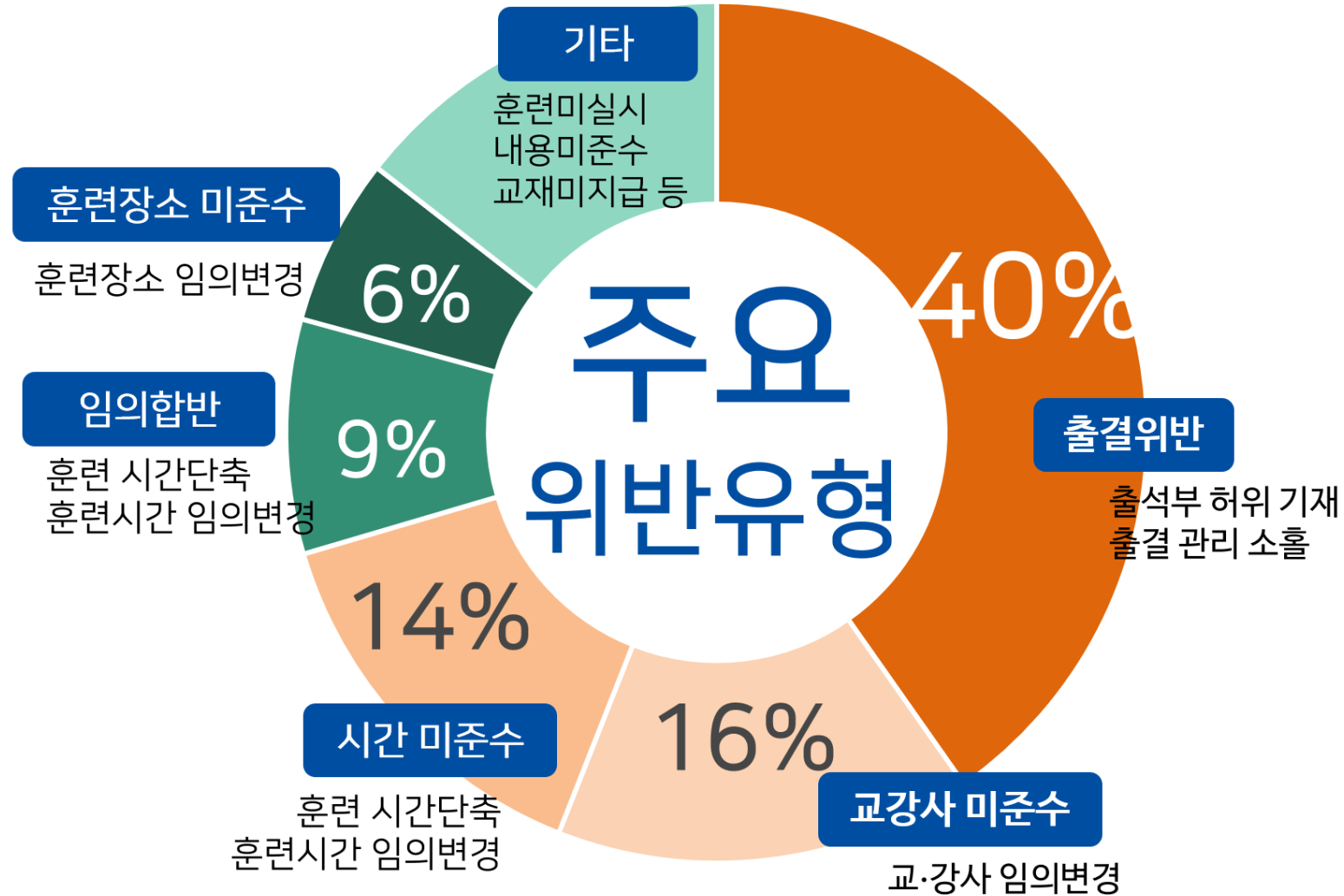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일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취소 및 1년간 전 과정 위탁·인정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2100여 만원 반환을 명하고 처분일 부터 360일 동안 지원과 용자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에 해당분야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또 인가받은 훈련계획에 따라 현장훈련실시 후 학습근로자수와 실제 훈련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인가 사업장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적발된 해당 업체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날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해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지급받아 왔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12월 일학습병행제 지원대상인 해당업체의 훈련대상자가 훈련일에 외부에 소방점검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부정수급을 적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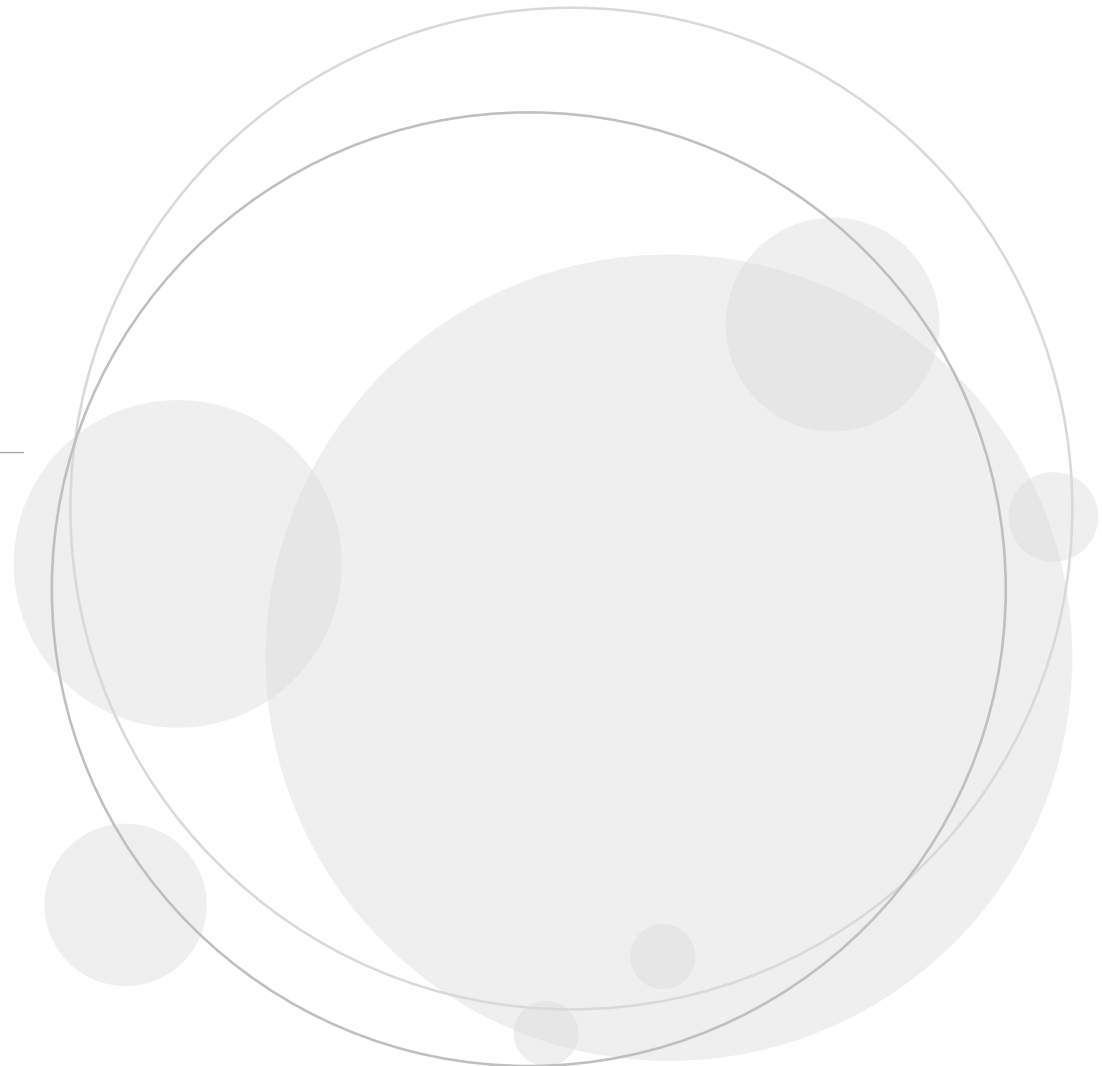
또 이번에 적발된 해당 사업체는 평소 출결관리를 소홀히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사실을 한꺼번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출결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4월부터 부정수급조사관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상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범죄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며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2. 위반행위 유형





3. 주요 부정훈련 사례

1. 출결부정
 2. 훈련시간 축소
 3. 훈련내용 임의변경
 4. 훈련장비 미준수
 5. 훈련교강사 임의변경
 6. 훈련시설 임의변경
 7. 지원금 부정수급
- 

■ 허위 비용신청



A기업에서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김00, 홍00 직원이 타 지점에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어 더 이상 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기업현장교사가 해당 직원의 학습활동서를 대리로 입력하고, 훈련일지 및 출석부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여 1년 9개월간 훈련비를 부정수급

출결관리

일학습병행제 훈련



컨소시엄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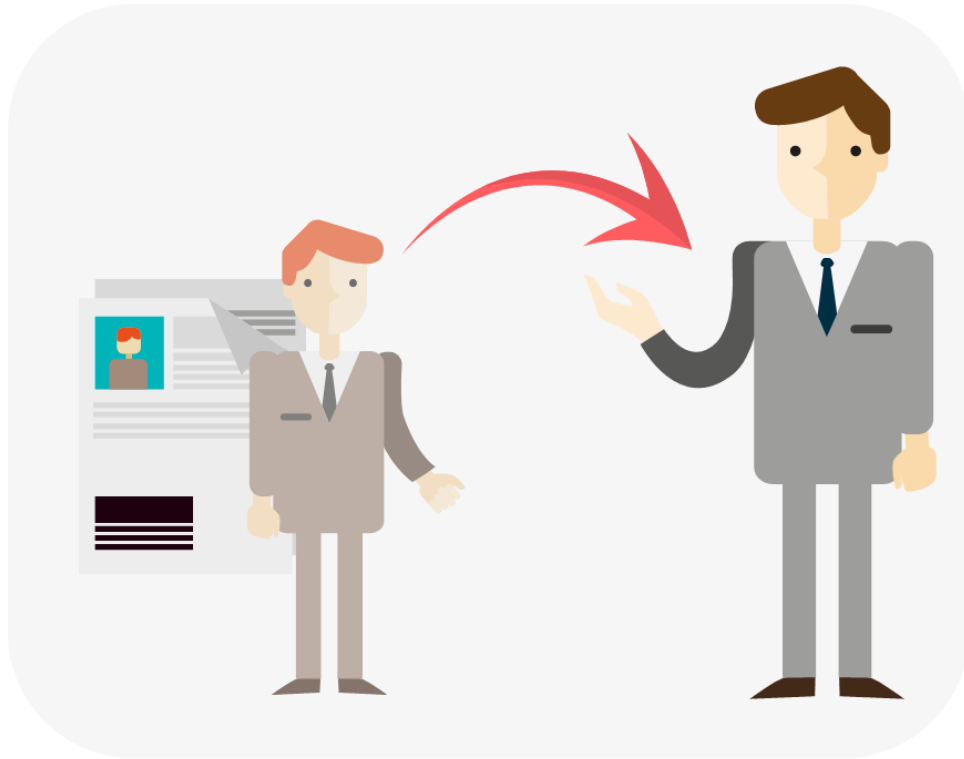
일학습병행 훈련시간 중 휴가, 출장, 컨소시엄 훈련 등 타 훈련 참여 등으로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근로자를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기재하여 훈련비 신청

■ 훈련내용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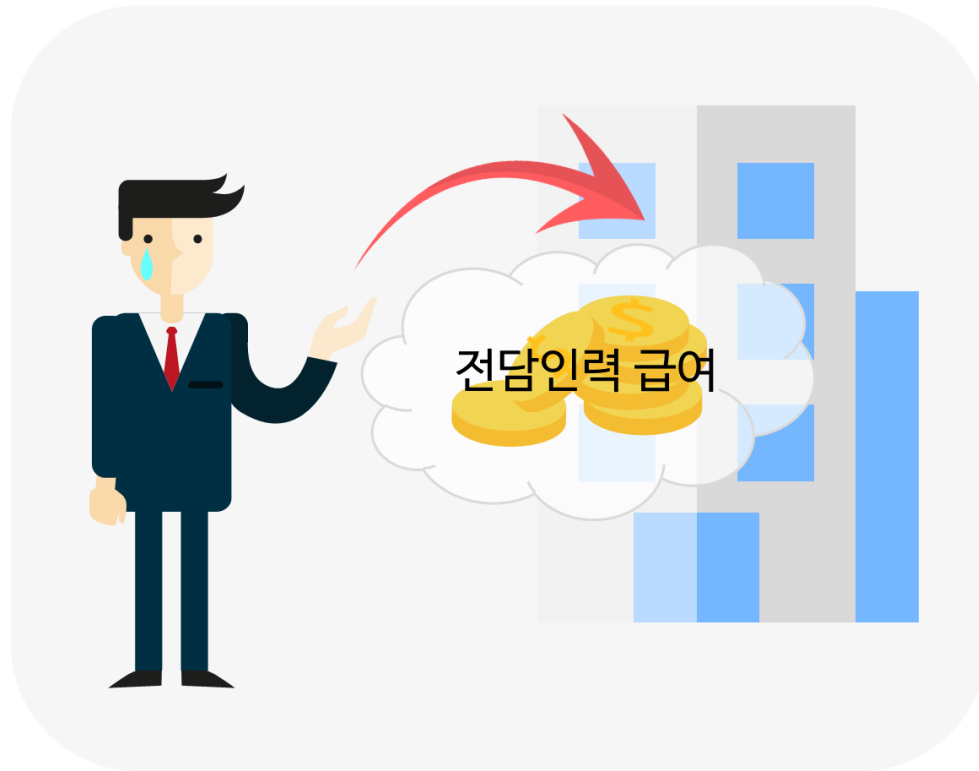
C기업은 일학습병행제 훈련시간에 계획된 OJT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학습근로자에게 소속 부서의 개별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학습 활동서에는 계획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기업현장교사의 학습일지도 계획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비용을 신청

■ 기업현장교사 임의변경



B기업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시 강00를 기업현장교사로 인정 받았지만 실제로는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강00를 대신하여 현장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W가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비 신청을 위한 학습일지, 출석부 등에는 모든 훈련을 처음 인정받은 강00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비용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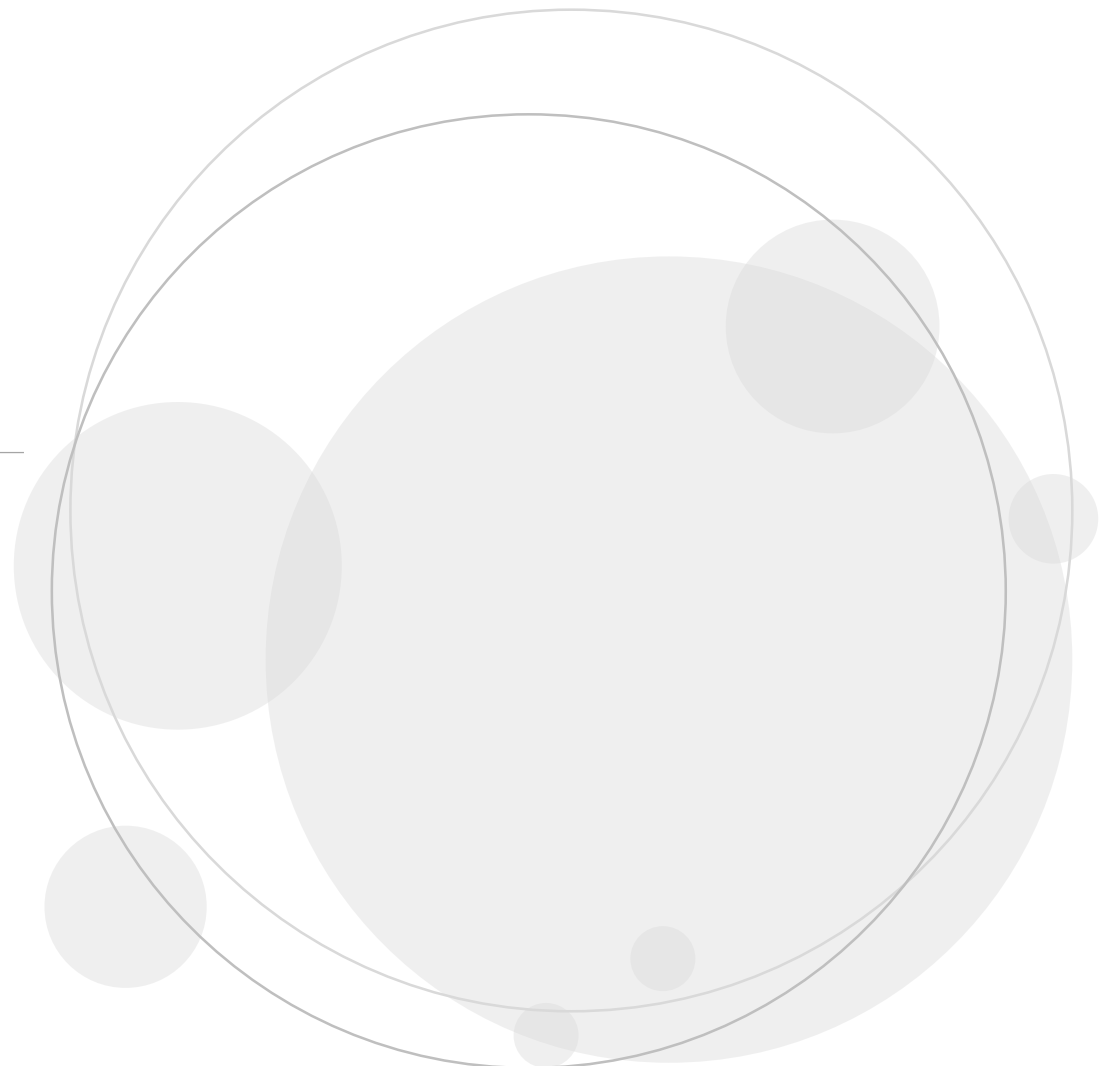
■ HRD 전담자 미준수



B기업은 사업주의 친인척 이00에게 'HRD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의 HRD담당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HRD담당 업무는 'HRD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입 직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친인척 이00에게 지급한 HRD담당자 수당 이체증과 허위로 작성된 전담인력 활동 내역서를 증빙하여 훈련비를 신청



4. 훈련운영 참고자료

1. 훈련품질관리 콘텐츠
 2. 훈련단계별 품질관리 가이드북
 3.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사례집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ksqa.or.kr)/훈련품질관리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소통마당

주요사업

정보마당

훈련품질관리

기관소개

홍보마당



훈련품질관리

공정한 심사평가.
함께 성장하는 직업훈련.

훈련품질관리콘텐츠

\ 품질관리 가이드북 리플렛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품질관리 R&D리포트

\ 이슈페이퍼 브리프

부정훈련예방 콘텐츠

\ 교육자료 부정훈련 사례집 최근 부정사례 및 유의사항

훈련단계별 품질관리 가이드북



훈련단계별 품질관리 가이드북

01 홍보

소개

이 책은 훈련생의 직업훈련 여정의 첫 단계로써 훈련기관의 홍보와 관련된 훈련생의 경험에 있습니다. 훈련생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 훈련생 수강평 분석 결과를 보면 많은 훈련생이 훈련기관에서 처음 상담받은 내용에 기대에 못 미치는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훈련기관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변경된 정보가 훈련기관의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홍보 담당자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홍보와 관련이 있는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경우의 광고를 대행하는 홍보 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로 부정확한 내용의 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훈련생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훈련기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모집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홍보 | 훈련생 상담과 선발 | 훈련과정 운영 | 훈련생 평가

훈련생 상담과 선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관련 법과 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획의 발급 및 운영) (☞ p.49)

<행정규칙>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9조(훈련상담) (☞ p.55)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훈련상담의 생략 및 단축) (☞ p.55)

훈련생 선발과 심사·평가

2020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계획 공고문

※ 해당 내용은 2020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내용이며, 이후 통합심사를 준비하는 기관 통합심사 계획 공고 및 설명회자료 등을 참고하여 변경된 내용들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평가 지표**
훈련기관의 훈련생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결과관리, 샘플평가, 가·감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현

평가영역	평가항목
2. 평가실행 (30점)	① 사전평가를 적절히 실시하였는가?
	② 본 평가도구는 훈련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적절한가?
	③ 평가계획에 따라 적절히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④ 훈련생에게 적절한 평가 안내가 이루어졌는가?

2020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설명회 자료집
(2020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현장평가 사전평가 평가 내용)

2.1 사전평가를 적절히 실시하였는가? (11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 시작 전 훈련생별로 훈련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기술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따라 훈련과정 운영 개선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 사전평가 목적: 훈련 시작 전 훈련생의 훈련 내용에 대한 수준(지식, 기술 등)을 진단하여 실시 그에 맞는 교육훈련이나 지원 활동 등 제공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생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사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훈련과정 운영가능성을 평가한다. 사전평가의 평가도구(문항)는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목표, 훈련수준, 훈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 수준을 진단하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사전평가 문항에 NCS훈련과정 개념 관련 문항은 훈련생 사전 수준을 진단하는데, 필수 사항

부실예방 체크리스트

- 훈련과정 설계 시 훈련목표, 내용, 수준에 부합하는 훈련대상자 요건을 설정하였습니까?
- 훈련생 모집 상담 시 훈련과정의 훈련내용, 수준, 훈련대상자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였습니까?
- 훈련생에게 훈련과정의 일정 및 자격시험 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하였습니까?
- 훈련생 선발 시 선수학습 수준, 직무 경력 등 훈련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까?
- 훈련생과의 상담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 선발된 훈련생들의 선수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 사전평가 결과를 훈련교강사들과 공유하고 훈련일정,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까?
- 훈련생에게 훈련운영 방법, 훈련내용, 훈련일정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까?
-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훈련생에게 배부하고 훈련기관 내에 비치하였습니까?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 사례집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 사례집 vol.2

시제 17
평가자로 조작 - 훈련이수자 평가 시 좋은 등급을 받기위해 평가자로 조작

본 적도 없는 시험이 백 점이라고요?

(1) 그림으로 보는 부정훈련 사례집 vol.2

일용당종 부정훈련 03

Q.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등 부실한 훈련 재료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부정훈련에 해당되나요?

A. NCS 훈련기준에는 각 능력단위를 이수하기 위해 학습해야 하는 훈련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능력단위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한 재료를 지급하거나 시들어 제 색상을 잃어버린 꽃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재료를 지급한다면, 훈련생이 해당 능력단위의 수행준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능력단위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정받은 훈련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NCS 훈련기준에 제시된 각 능력단위 별 수행준거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재료를 지급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정훈련 사례 101



Korea Skills Quality Authority

12 Fl. METRO TOWER, 10, Toegye-ro, Jung-Gu, Seoul,
04637, Republic of Korea
1644-5113